

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11. 23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김충식 부위원장
홍성규 상임위원
김대희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양문석 상임위원 (1인)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'09.7.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'10.1.14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- (주)현대HCN 등 27개사 - (2012-63(서)-254)

- 「방송법」 제77조제1항에 의거, (주)현대HCN 등 2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승인내용 >

① 디지털 유료채널 및 데이터방송 등 상품 신설

상호/법인명	상 품 명	내 용	이용요금	비 고
(주)현대HCN 계열 8개사*	유료채널 - VIKI	- 성인영화 등	- 월정액 7,500원 이하	VAT별도
	- 펜트하우스	- 성인영화 등	- 월정액 7,500원 이하	VAT별도
	데이터방송 - 뽀로로 재능놀이	- 유아용 게임 등	- 일정액 1,000원 이하 - 월정액 3,500원 이하	VAT별도
	- 디보홈스쿨	- 어린이 영어교육 등	- 월정액 3,500원 이하	VAT별도
(주)씨앤엠 계열 17개사**	유료채널 - 스파이스TV	- 성인영화 등	- 일정액 1,500원 이하	VAT별도
	- 미드나잇	- 성인영화 등	- 일정액 1,500원 이하	VAT별도
	- 비키_HD	- 성인영화 등	- 일정액 1,500원 이하	VAT별도
	- 허니TV_HD	- 성인영화 등	- 일정액 1,500원 이하	VAT별도
	데이터방송 - 몽키3 뮤직(스트리밍)	- 음악(뮤직비디오) 서비스 등	- 2013년(시행) : 월정액 4,000원	VAT별도
	- 몽키3 뮤직(스트리밍 +MP3다운로드)	- 음악(뮤직비디오) 서비스 등	- 2013년(시행) : 월정액 8,300원 - 2014년 : 월정액 9,200원 - 2015년 : 월정액 10,100원 - 2016년 : 월정액 11,000원	VAT별도
(주)씨앤엠강남 케이블티브이	VOD - 시리즈 VOD	- 시리즈 묶음 VOD	- 시리즈당 20,000원 이하	VAT별도
대구케이블 방송(주) 티씨엔 대구방송(주)	유료채널 - 미드나잇	- 성인영화 등	- 월정액 6,500원 이하	VAT별도
	- VIKI	- 성인영화 등	- 월정액 7,500원 이하	VAT별도

* 현대HCN 계열 8개사 : (주)현대HCN서초방송, (주)현대HCN동작방송, (주)현대HCN, (주)현대HCN부산방송, (주)현대HCN금호방송, (주)현대HCN새로넷방송, (주)현대HCN경북방송, (주)현대HCN충북방송

** 씨앤엠 계열 17개사 : (주)씨앤엠, (주)씨앤엠중랑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

② 디지털 VOD 상품 폐지

상호/법인명	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(주)씨앤엠강남 케이블티브이	VOD(PPV) - PPV(Pay-Per-View) 편당 1,400원 이하 - PPD(Pay-Per-Day) 편당 1,800원 이하 - PPS(Pay-Per-Series) 편당 2,000원 이하	폐 지	VAT별도

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-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92개사
 - (2012-63(서)-255)

-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9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종합유선방송사업자	변경사항	신청 주요내용
(주)티브로드 계열 21개사*	운용채널 및 시설변경	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하여 송신하기 위한 장비변경
(주)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8개사**		
(주)씨앤엠 계열 17개사***		
(주)씨엠비 계열 9개사****		
(주)현대HCN 계열 9개사*****		
대구케이블방송(주) 등 개별SO 18개사*****		

* **티브로드 계열 21개사** :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, (주)티브로드노원방송, (주)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, (주)티브로드동대문방송, (주)티브로드서대문방송, (주)티브로드광진성동방송, (주)티브로드종로중구방송, (주)티브로드ABC방송, (주)티브로드한빛방송, (주)티브로드수원방송, (주)티브로드기남방송, (주)티브로드남동방송, (주)티브로드새롬방송, (주)티브로드서해방송, (주)티브로드대경방송, (주)티브로드대구방송, (주)티브로드낙동방송, (주)티브로드동남방송, (주)티브로드서부산방송,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, (주)티브로드중부방송

** **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8개사** : (주)씨제이헬로비전, (주)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드림시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

*** **씨앤엠 계열 17개사** : (주)씨앤엠, (주)씨앤엠중랑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

**** **씨엠비 계열 9개사** : (주)씨엠비한강케이블티브이, (주)씨엠비동서방송, (주)씨엠비대구동부방송, (주)씨엠비대구수성방송, (주)씨엠비대전방송, (주)씨엠비대전방송동대전지점, (주)씨엠비광주방송, (주)씨엠비광주방송동부지점, (주)씨엠비광주방송전남지점

***** **현대HCN 계열 9개사** : (주)현대HCN서초방송, (주)현대HCN 동작방송, (주)현대HCN, (주)현대HCN부산방송, (주)현대HCN금호방송, (주)현대HCN새로넷방송, (주)현대HCN경북방송, (주)현대HCN충북방송, (주)한국케이블TV포항방송

***** **개별SO 18개사** : 대구케이블방송(주),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(주), 티씨앤대구방송(주), 남인천방송(주), (주)한국케이블TV광주방송, JCN울산중앙방송(주),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브이, (주)아름방송네트워크, (주)한국케이블TV나라방송, (주)강원방송, (주)영서방송, (주)충청방송, (주)씨씨에스 충북방송, 금강방송(주), (주)한국케이블TV전북방송, (주)한국케이블TV호남방송, (주)하나방송, (주)서경방송

다.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- (2012-63(서)-256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의거, (주)KT가 제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협정의 주요 내용

- ① (접속망 구성) 접속이용사업자(CJ헬로비전)의 양천/역삼 국사의 국제전화 교환기로부터 접속제공사업자(KT)의 구로/혜화 국사의 시외교환기까지의 접속회선 구성
- ②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제공사업자인 KT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방통위가 결정·통보한 요율을 적용
- ※ '12년 접속통화요율이 정해지지 않아 우선 '11년 요율을 기준으로 정산하고, '12년 접속통화요율이 정해지면 차액을 사후 정산기로 함
- ③ (부대서비스 비용) CJ헬로비전이 이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국제전화 이용요금은 KT가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과금 및 수납하기로 합의

라. 「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」 등 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63(서)-257)

- 일몰기한 연장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기준 완화 등을 위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(고시)

- 금지행위 위반사실에 대한 사업장·대리점 공표 시 공표크기를 전지규격(78.8cm×109cm)에서 A2사이즈(42cm×59.4cm)로 완화함

②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(고시)

(1) 결합상품 가입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

- 허위·과장 등 광고를 통한 이용자 유치행위 금지
- 계약 체결 시 할인율과 위약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계약서 교부의무
-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 인정

(2) 결합상품 이용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

- 이용 중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용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
- 계약 시 약속한 서비스 품질기준 유지 의무

(3) 결합상품 해지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

-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 불능 시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 인정

※ 단,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지권 제한함

-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 불능 시 이용자가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 할인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※ 단,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남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결합 상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로 함

-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, 해지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

-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함

③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(고시)

-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위반관련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 관련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통일시킴

○ 향후 일정

- 관보게재 및 시행 : '12년 11월 29일(결합판매고시는 '13년 6월 1일 시행)

마.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- 한국교육방송공사 - (2012-63(서)-258)

○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위원회가 명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'EBS 다크프라임'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'12.11.16)에 대한 원심 집행정지 신청('12.11.20) 건에 대해 원안대로 재심 청구 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의결함

【 원심결정의 개요 】

■프로그램명	EBS-TV 'EBS 다크프라임' 2012.9.11.(화), 21:50-22:45
■제재조치 처분명령	주의
■주요 위반 내용	○ 아동성범죄자가 ▲성폭행을 시도하다 아이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아이를 방치한 채 도망친 사례와 ▲여자 아이를 창고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례 등을 재연 형태로 소개하면서, 해당 장면에 어린이를 출연시킴
■관련규정	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39조(재연기법의 사용)제1항